

건설관련 법률상담

이용운 법무법인 민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판사)

CEO가 알고 있어야 할 회생절차 상식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여 존폐의 위기에 처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기업회생 전문변호사로서 많은 기업을 회생절차개시 신청하여 회생계획인가를 받아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쁜 업무지만 많은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아직도 부도에 직면한 기업의 대표이사들로부터 ‘제가 이변호사님을 1년전, 아니 6개월전에만 만났더라도 보다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라는 회한조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 안타깝고 죄스러운 마음이 든다. 그렇다. 2006.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로 우리나라 도산법이 통합 정비되면서 회생절차에 관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현실에서는 기업의 대표이사마저도 회생절차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회생제도(법정관리)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제3자관리인을 파견하여 결국 경영권을 빼앗기게 되고,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제3자관리인 선임, 필요적 파산선고 등은 과거의 회사정리법 시절에 있었던 제도이나,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통합도산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줌으로써 기존 대표이사에게 경영권을 보장해 주고 있고, 인가 전에 절차 폐지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파산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법과 실무가 정착되어 그러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말이다.

통합도산법에서는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체를 가진 모든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회생이 가능한지 여부는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채권자들의 판단을 받게 되므로, 기업의 CEO로서는 적어도 우리 회사도 회생절차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나중에 후회를 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

회생절차는 대표적인 재건형 도산절차로서 기존 대표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향후 10년간의 수익으로써 채무변제를 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면제를 받는 절차이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우선 채권자들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회사로서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금지되어 법적으로 채무독촉에서 자유로워진다. 그 후 조사위원(회계법인)이 향후 10년간의 소득(계속기업가치)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어떤 채권자에게 언제 얼마를 변제할 것인가에 관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친다. 회생계획안은 각 회사의 계속기업가치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0~70%이상의 채무를 탕감하고, 나머지 30~40%의 채무를 10년간 분할하여 연말에 한번 변제하는 형식으로 작성된다.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회생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채무를 변제해 나가면 되고, 법원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생절차를 종결하므로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지난해부터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여 기존 회생절차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회생계획인가 후 빠른 시간안에 회생절차를 종결하여 기업을 시장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있다. 즉 기존 회생절차는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계획 인가를 받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렸고, 또 조기종결을 받기까지 적어도 2~3년의 기간이 걸렸지만, 패스트트랙의 도입으로 회생계획 인가까지의 기간을 4개월 정도로 단축하였고, 인가 후 바로 회생절차를 종결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신청 후 1년 이내에 시장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관급공사를 수주하여야 하는 기업의 경우 회생절차 신청 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기까지는 관급공사의 수주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었으나, 위와 같이 회생계획안 인가 시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인가 후 바로 관급공사의 수주가 가능하게 되어 패스트트랙은 기업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기업의 CEO들은 자금사정상 누가 보더라도 몇 달 후에는 어음부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견하면서도 회사뿐만 아니라 먼 친인척의 재산까지 처분하여 어음을 막아오다가 회사의 최소한의 운영자금마저도 고갈시킨 후에야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경제적 파탄시점에 임박하여 특정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편파변제로써 도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부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오히려 특정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또한 결과적으로 회사의 운영자금을 고갈시켜 회생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래 부도가 불가피하다고 예견되면 일단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유보

하고, 운영자금을 충분히 확보한 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회생절차의 진행 여부를 과감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기업을 경영하는 CEO가 회생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기업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식이 없어 이에 대한 검토조차 한번 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만다면 아무리 부도를 막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선

을 다한 CEO라는 말은 듣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CEO라면 적어도 회생절차에 관한 기본 지식은 항상 숙지하고 있어 기업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참고하여야 한다. 모두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한다. 하지만 일단 살아남아야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업의 CEO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회생절차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이용운 변호사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 동대학원 졸업
일본 동경대 교육 파견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
(현) 법무법인 민(民) 변호사

법무법인 민(民)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6(역삼동 823-21) 대공빌딩 7층(135-933)
대표번호 02)599-2100, 팩스 02)595-1997